

## '86산업보건

### 탄광근로자를

### 중심으로 전개

소 장 고 홍 소

#### 1. 지역특성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는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 노동부 지방사무소중에서 가장 산간오지에 있다.

당사무소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태백시와 삼척군중 도계읍과 원덕읍 그리고 하장면으로서 (1시2읍1면) 인구는 183,000여명이다.

이 지역에 사람이 모여서 읍이나 시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1961년 5.16 이후 정부의 연료정책이 바뀌고 부터이다. 종전 까지만 하여도 시골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는 도시까지도 나무(장작)에 의존하여 가정연료를 해결하던 것을 무연탄으로 대체하고부터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광산의 역사를 살펴 본다면 1934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태백시 계산동(구 강원도 삼척군 장성)에 개광되었으나 그때만 하여도 공업이 日淺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여 석탄연료 개발의 필요성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연간 약 790만톤으로서 전국 수요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대상은 광산이 되고 있다.

#### 2. 행정대상

노동행정의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222개 이나 그 중에서 광산이 62개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4,237명으로 전체 근로자 28,150명의 86%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장수에서는 광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근로자수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의 주 행정대상은 광산과 그 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된다.

당소 관내 광산은 대부분이 석탄광산이고 석탄광산은 다른 종류의 광산에 비교하여 볼 때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광산재해는 안전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즉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의 경우와 채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라고 하는 직업병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광산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의 요양을 맞고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20개소이다. 종합병원인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은 광산에 장기간 근로하다 발병한 진폐환자를 치료할 규폐병동을 별도로 설치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 3. 산업보건관리실태

'84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18,286명을 실시하고 특수검진 14,226명을 실시하였다. 특수검진은 분진작업자 14,226명중

에서 진동과 소음에 대하여도 특수검진을 받은 근로자가 있어 총실시 건수는 15,563건이나 된다. '85년에는 '85.4.1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그리고 진폐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광산업체는 다른 업체들 보다 채용시 근로자 건강진단은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갱내작업은 6시간이나 노동의 강도가 심하고 갱내에는 분진이 비산하기 때문에 진폐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인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손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원하는 물건을 적기에 공급하여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산업체의 건강진단도 기업주의 필요성에 의하여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다. '85.9.2에 진폐검진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85.4.1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검진 비용도 진폐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86년부터는 광산업체의 근로자 건강진단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펴갈 계획으로 있어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광산근로자의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4. 보건관리상 문제점

광산에 들어서면 어느광산이나 마찬가지로 「안전제일」이라는 표시가 제일먼저 눈에 뜨이게 된다. 산위에도 갱구에도 또 갱내에도, 부착시켜 놓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항상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는 안내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광산안전이란 근로자에 대한 위협한 재해를 방지하는 것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광산재해란 채광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근로자가 자재 및 기구를 사용하여 광산이라는 특수환경속에서 특정방법으

로 광물채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건을 말하고 여기에는 인적상해와 재산상 손실이 따르고 있다. 이곳 광산의 주작업장은 지하 갱내가 되며 작업장의 심부화로 인하여 지압, 지열, 출수, 가연성가스등의 증가로 통기곤란, 분진, 소음, 조명불량, 습도의 과다등으로 재해가 발생되기 쉬운 특수환경에서 작업함으로써 다른 산업보다 안전제일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광산의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우선 급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작업환경의 불량이나 작업방법의 불량으로 오는 직업병의 사전예방에는 소홀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광산근로자에게 발병하는 진폐라는 직업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채탄을 하지아니 하는 방법뿐이라 국가 에너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석탄의 채탄조건은 점점 심부화되어 가고 있어 지하 수백미터, 갱구로부터 수키로미터 막장까지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개별 근로자별로 보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각 광산업체에서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소관내 50인이상 고용사업장에 보건관리자는 100% 선임하였고 1,000인 이상 고용사업장 5개중에서 3개소가 전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전임이나 비전임 보건관리자의 다수가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질병의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로 발생된 산재환자의 치료에만 열중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업주가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업 풍토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5. '86 산업보건 시책방향

산업안전과 보건은 학술상으로는 별개이겠지만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할때는 병행 실시되어

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광산에서의 안전분야는 동자부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2원화 되어 있다.

그래서 '86년도 산업보건 시책은 근로자가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발병된 질병은 조기에 발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하여서는

첫째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첫째로는 근로자 스스로의 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당지역 100 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음)이 당사자로서 안전·보건상 문제를 제기 하도록 하므로서 광산 막장 구석구석의 불량한 작업환경의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며 매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대책을 협의하게 된다면 갱내작업환경은 몰라보게 개선될 것이며 쾌적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로는 재해가 감소되고 노동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둘째는 보건관리의 철저이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 조 3 항에 정하여진 시간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보건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하여야 하겠다.

보건 관리자가 본연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의 권고를 성의있게 받아드린다면 사업장내 보건업무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로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철저이다.

작업환경 측정대행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근로복지공사 진폐연구소를, 진폐 건강진단은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실시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때문에 '86년부터는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은 철저히 시행될 것이다.

넷째는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할 각종 보호구는 모두 사업주가 국가 검정품이나 KS 표시품을 구입한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

하겠다.

'85년에 보호구 지급실태를 파악한바 근로자가 구입하거나 불량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현재 시정중에 있으며 '86 상반기에는 모두 시정되도록 하겠다.

다섯째는 세탁소의 설치운영이다. 당지역내에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위시하여 수개 광산이 세탁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86년에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필히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광산의 막장은 채탄을 하기때문에 항상 습기가 많고 작업복이 젖어서 더러워 지기 마련이다. 근로자는 더러워진 작업복을 벗어던진 후 목욕을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 입은 후 귀가하고 그 이튿날 출근을 하면 전날 벗어둔 작업복이 깨끗한 작업복으로 세탁되어있어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작업능율은 향상되고 산업재해도 상당수 예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산근로자의 작업복의 색깔도 바꾸도록 지도하겠다. 갱내가 어둡고 석탄도 검은색깔이니 작업복의 색도 검정색으로 통일한 것 같다. 그래야만 세탁을 자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의 검은색상은 사람의 눈에 잘 띄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충돌의 재해도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높은산에 등산을 할 때도 빨강이나 노랑색등 원색의 등산복을 착용하는것도 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사람의 눈에 쉽게 띄이게 하여 빠른 시간내에 구조하기 위한 면도 있다고 한다. 광산의 갱내에서 쉽게 잘 보이는 색상은 노랑색이라고 한다.

어두운 갱내에서 검은색의 작업복을 입는것 보다는 밝은 색상의 작업복을 착용하게 한다면 근로자의 마음도 밝아져 결국 보건관리상도 유익할 것이다.

자료정리 : 근로감독과장  
申 三 郎